

울산지방법원 2022. 1. 18 선고 2020나1624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1. 주식회사 A

2. 주식회사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서진

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동열

피고, 항소인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를

담당변호사 김석환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세용

변 론 종 결 2021. 11. 2.

판 결 선 고 2022. 1. 18.

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. 10. 7. 선고 2018가단75155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1. 가. 주식회사 E과 피고 C 사이에 2017. 6. 7. 공증인 F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228호
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45,968,4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
나. 주식회사 E과 피고 D 사이에 2017. 6. 7. 공증인 F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229호
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14,289,3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
다. 원고 주식회사 A에게, 피고 C는 45,968,403원, 피고 D은 14,289, 315원 및 위 각 금원에
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주식회사 E과 피고 C 사이에 2017. 6. 7. 공증인 F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228호로
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18,546,9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
나.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8,546,9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
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
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7면 2 내지 7행 중 일부에 아래와 같이 각주 1), 2)를 추가한다.

2017. 12. 22. 기준 G의 E에 대한 판결금 원금은 129,041,980원[원금 167,618,000원 -
(47,902,928원 - 이자 9,326,908원1)]]이 남게 되고, 울산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서의 G의 배당금
69,530,067원 역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G의 채권액에서 차감하면 2018. 3. 26. 기준 G의 E에
대한 채권원본 잔액은 64,496,822원[원금 129,041,980원 - (69,530,067원 - 이자 4,984,909원2)

))]이

된다.

○ 제7면 12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「채권자가 어느 수익자(전득자 포함)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,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,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).」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준영, 판사 장성신, 판사 박관형

1) 원금 167,618,000원에 대하여 2017. 4. 11.부터 2017. 10. 28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17. 12. 22.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.

2) 원금 129,041,980원에 대하여 2017. 12. 23.부터 2018. 3. 26.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.